

▶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7)



중소기업청

중소기업 제품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

중소기업 · 투자기관 · 정부 3자 매칭 방식으로 100억원 지원

사업개요

- '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'은
 -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'기술개발지원사업'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,
 -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 ·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,
 -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



신청 및 참여자격

- 중소기업
 - 2006. 1. 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'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' 또는 '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'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'성공'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
- 투자기관
 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
 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

지원방식

- 중소기업이 제안한 '제품개발 과제'에 대해 정부, 투자기관,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하는 방식
 - ※ 프로젝트 투자란 :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
- 투자비율은 정부 50%, 투자기관 30%, 중소기업 20%



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100억원(15개 과제)
- 지원한도
 -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% 범위에서, 최대 7.5억원까지 지원
- 사업비 투자 및 부담기준
 -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%이상 현금으로 투자
 -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%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
 - ※ 기업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부담
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- 투자심사신청 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투자심사신청서 접수
 - 투자심사신청서 접수 : <http://rnd.kvca.or.kr> → 온라인 신청 · 접수
 - 신청기간 : '09. 8. 3(월) ~ 8. 14(금) 24:00까지
- 과제신청 방법 :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이 직접 제출
 - 신청기간 : '09. 9. 28(월) ~ 10. 9(금)